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945
----------	------

제안일자 : 2021. 11. 29.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수정이유

- 자치구 실정에 따라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자치구가 직접 집수리 지원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예산 지원이 가능토록 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안 제11조 제목을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하고,
- 안 제11조제2항 중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운영비 등을”을 “설치하거나 집수리 지원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한다.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 제목을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한다.

안 제11조제2항 중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운영비 등을”을 “설치하거나 집수리 지원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1조(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집수리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신 설></p> <p><신 설></p>	<p>제11조(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u>운영</u>)</p> <p>① <u>시장은 서울 시내 저층주거지역의 집수리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집수리 지원센터(이하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② <u>시장은 구청장이 자치구내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를 <u>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u></u></p> <p>③ <u>시장은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u></p>	<p>제11조(----- ----- <u>운영 등</u>)</p> <p>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 ----- <u>설치</u> <u>하거나 집수리 지원</u> <u>사무를 수행하는 경우</u> <u>예산의 범위 안에서</u> -----.</p> <p>③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서울시내 저층주거지역의 집수리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집수리 지원센터(이하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이 자치구내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집수리 지원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1조(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u> 시장은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집수리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u>제11조(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u> ① 시장은 서울시내 저층주거지역의 집수리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집수리 지원센터(이하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구청장이 자치구내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집수리 지원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